

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 직업군을 포괄하는 비자 부재
 - 연예인·배우·공연자 대상으로 발급되는 E-6 비자 발급 대상에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 미포함
- (문제점)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들의 합법적 체류와 안정적 활동 불가
 - 별도의 체류자격 없이 관광 또는 일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활동 중

□ 건의내용

- 기존 E-6 비자의 체류자격 확대
 - 유튜버·틱톡커·SNS 인플루언서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
- E-6 비자 발급 요건 완화
 - 장기적으로 E-6 비자 발급의 필수 요건인 '소속사·에이전시 계약' 요건(1인 미디어 창작자에 부적합한 요건) 완화 등 비자 발급 기준 완화 검토 필요

<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(일반체류자격) 별표1의 2 >

현 행		개정안	
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(제12조관련)		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(제12조관련)	
19. 예술 흥행 (E-6)	수익이 따르는 음악, 미술,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, 연주, 연극, 운동경기, 광고·패션 모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	19. 예술 흥행 (E-6)	수익이 따르는 음악, 미술,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, 연주, 연극, 운동경기, 광고·패션 모델, 1인 미디어 창작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

※ 다만, 비자 요건 완화 시 자격기준(구독자, 수익 등) 마련과 체류 활동 관리 필요

□ 향후계획

- 법무부 검토 진행사항 확인 및 후속 대응 : 6 ~ 12월

※ 행정안전부 → 법무부 안건 배부(6월중), 법무부 위원회개최('25. 하반기)